

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「 시도경제협의회규정 」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지역경제협의회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지역경제협의회 구성 등의 사항을 명시함(안 제3조~제5조)
- 회의의 개최, 의안의 제출과 배부, 의견 청취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10조)
- 지역경제협의회 상정 의안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명시함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)

가. 제출배경

- 지역경제협의회는 기존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운영되던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7개 분과위원회 중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음
-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“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(심의위원회 등)은 명칭, 기능 등 지자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음” 으로 해석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문기관인 지역경제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」 을 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검토내용

1)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

-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, 대통령령인 「시·도경제협의회규정」(이하 “협의회 규정”이라 함) 제9조제1항에서는 ‘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.’ 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2항에서는 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’ 고 규정하고 있음

제9조(지역경제협의회 설치) ①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·조정을 위하여 각 시·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또한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‘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’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‘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’ 고 규정하고 있는바

-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「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」의 제정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
-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구 분	조 례 명	제정일자
부 산 광 역 시	부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	1992.01
대 구 광 역 시	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1.12
인 천 광 역 시	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1991.10
광 주 광 역 시	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1.10
대 전 광 역 시	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1.10
울 산 광 역 시	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7.07
세종특별자치시	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2013.01
경 기 도	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0.07
강 원 도	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1.12
충 청 남 도	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	1991.11
전 라 북 도	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	1992.05
전 라 남 도	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3.01
경 상 북 도	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	1992.06
경 상 남 도	경상남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1.11

2)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**안 제2조**는 지역경제협의회 기능 규정함
 - 지역경제협의회는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·조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본 조에 명시된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시·도경제협의회의 심의내용과의 연결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
- **안 제3조**는 지역경제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 - 「협의회규정」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방법은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,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
- **안 제6조**는 지역경제협의회의 회의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 - 지역경제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이는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여짐

-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안의 배부 및 제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의회의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9조는 협의회 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것으로 심의기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임
- 안 제10조는 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,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협의회와 재공유하여 협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되도록 함
- 안 제12조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,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협의회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기존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통합 운영되었던 기능 중 하나인 지역경제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」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
-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